

2026년 화성시 예술단 1차 모집 최종합격자 공고

2026년 화성시 예술단 1차 모집 최종합격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6. 2. 26.

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최종합격자 명단

모집구분	모집분야	모집직급	최종합격인원	최종합격자명단 (응시번호)
계			5명	-
공개경쟁	예술감독(오케스트라)	기간제근로자	1명	A-00025
	예술감독(국악단)	기간제근로자	1명	B-00002
	사무단원(악보계)	기간제근로자	1명	C-00007
	사무단원(홍보)	기간제근로자	1명	D-00001
	사무단원(사업관리)	기간제근로자	1명	E-00011

예비합격자 명단

모집구분	모집분야	모집직급	예비합격자명단 (응시번호)	예비순위
계			-	
공개경쟁	예술감독(오케스트라)	기간제근로자	A-00019	예비 1순위
			A-00013	예비 2순위
	예술감독(국악단)	기간제근로자	B-00004	예비 1순위
			B-00005	예비 2순위
	사무단원(악보계)	기간제근로자	C-00001	예비 1순위
			C-00006	예비 2순위
	사무단원(홍보)	기간제근로자	D-00002	예비 1순위
	사무단원(사업관리)	기간제근로자	E-00003	예비 1순위
E-00008			예비 2순위	

※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

임용후보자 등록

- 등록일자 : 2026. 2. 27.(금) 09:00 ~ 18:00
- 등록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,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문화사업팀
- 등록방법 : 임용후보자 등록 서류 **방문 제출**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발급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- 신원진술서 1부 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-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- 공정채용 확인서 1부 -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- 채용비위 관련 확인서 1부 -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 	첨부문서 작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	전자후견등기시스템(온라인), 지방법원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초본 1부 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	정부24(온라인), 무인민원발급기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	정부24(온라인), 졸업학교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명사진(3.5×4.5cm) 이미지 파일(JPEG, PNG 등) ※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은 lgc@hcf.or.kr로 송부 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장사본 1부 	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1부 ※ 2025년 이전 수료한 경우 재발급 	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(https://www.stagesafety.or.kr) 상단 메뉴 [안전교육] → [온라인 교육신청] ※ 예술감독 : 공연자 안전교육(출연자 과정) ※ 사무단원 : 공연자 안전교육(스태프 및 작업자 과정)

○ 임용예정일자 : 2026. 3. 16.(월)

○ 기타사항

- ▶ 최종합격자는 등록기한 내 임용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- ▶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
○ 채용서류반환 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(임용 확정자 제외)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 **문 의 :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031-290-4637 / 4636**